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수 자 원 의 조 사 · 계 획 및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수문조사 전담기관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법률에 명시되고(법 제9조제6항), 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가 법 제9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①기술원의 사업 범위, ②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시행령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는 법률 개정에서 제도로 흡수되므로 삭제하고, 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제8조의2,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는 제8조의3 및 제11조(교육), 제12조(검정수수료), 제38조(위탁기관)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조항 삭제(현행 제8조 삭제)”

- 1) 현행 제8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으로 기술원이 법률상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직접 명시됨에 따라 기존 지정 절차를 삭제함

나. 기술원의 사업 수행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사업 수행 범위를 구체화 함.”

- 1) 수문자료의 생산·분석·관리 지원, 수자원의 계획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 지원,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실증 및 인력양성, 수문조사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등을 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 2) 이 조항은 기술원에 새로운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서 수행해 온 전문적·기술적 기능을 법률 위임에 따라 사업 범위로 명확히 하는 것임.

다.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 신설(안 제8조의3 신설)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을 구체화 함.”

- 1) 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결산 및 운영실적 보고 요청, 기술원에 출입하여 검사 및 자료 제출·시정 또는 보완 요구, 정관 변경 및 분원·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승인 등을 기술원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리·감독 범위로 규정함.
- 2) 이 조항은 기술원에 대해 새로운 관리·감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수문조사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법률 위임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20. ~ 7. 31.) 예정

3) 행정규제 : 사전 협의 예정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사업)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문자료의 생산·분석·관리 지원
2.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지원
3. 수자원의 계획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 지원
4.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인력 양성
5. 수문조사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6.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의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

2. 기술원의 결산 및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 요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기술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원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분원·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교육”을 “6시간 이상의 재교육”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검정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u> ①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수문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수문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30명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추는 것 ② <u>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u>	<u><삭 제></u>

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제8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사업)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문자료의 생산·분석·관리 지원
2.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지원
3. 수자원의 계획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 지원
4.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인력 양성
5. 수문조사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6.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의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 ①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

2. 기술원의 결산 및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 요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기술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원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 분원·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

----- 6시간 이상의 재교육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① -----

----- 검정수수료
-----.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제38조(위탁기관)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 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5. <u>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 된 전담기관</u> 6. (생략) ② (생략)	<u>의 검정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38조(위탁기관)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 자원조사기술원</u>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